

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

발의연월일 : 2012년 9월 21일

발 의 자 : 김재종 의원

찬 성 자 : 손문규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”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위 원 수 : 7인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최근들어 세종시 출범, 청주·청원의 통합, 혁신·기업도시건설과 첨단의료복합단지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으나
-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도내 일부 지역의 소외·상실감과 지역갈등 요인 등으로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
-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책연구
- 남부·북부권의 특성을 살리고 권역내 시군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책 중점 연구 및 발굴 등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을 수렴 반영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

나.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
관련법규 발췌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【 지방자치법 시행령 】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【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】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